

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審 査 報 告 書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3. 2.
- 나. 제출자 : 수원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9. 3. 6.
- 라. 상정일자 : 2009. 3.13.

2. 提案說明要旨(제안설명 : 문화체육국장 김영규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, 육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「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수원시 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정의(안 제1조 내지 제2조)
- 출연금 · 보조금의 지원과 운용에 관한 규정(안 제3조, 제4조, 제7조 내지 제10조)
-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)
- 사무의 검사 · 감독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

3. 檢討報告要旨(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주호)

○ 본 조례(안)은

-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·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· 육성토록 규정되어 있고, 동법 제15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를 보면 개인 ·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설립 · 시설 ·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이나 그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 동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·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에서 문화원을 육성 · 진흥하기 위하여 재산의 출연, 출연금의 귀속, 문화사업 등의 위탁,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, 안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, 안 제9조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등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끝으로

-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발굴 ·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.

4. 審査結果

- 이의없이 원안 가결.